

시리아(Syria)

1 근거법 제정 시기

- 최초법 및 현행법 : 1959년(사회보험)

2 제도형태

- 사회보험제도

3 적용대상

- 당연적용 : 산업, 무역 및 농업에 종사하는 근로자; 자영자; 공무원 및 군인; 프리랜서; 가계노동자; 및 사용자
- 임의적용 : 해외에서 근로하는 시리아 국민은 임의가입 대상
- 적용제외 : 가족노동 및 외국 외교관과 국제기관 근로자를 포함한 특정 외국인

4 재원조달

- 가입자 : 월 소득의 7% + 임의보조장애급여 및 사망급여를 위한 월 소득의 1% 선택적 추가 납입 가능
- 자영자 : 월 신고소득의 21.1%
- 사용자 : 월 임금지급총액의 14.1%
- 정부 : 없음; 사용자로서 기여함.

5 급여종류별 수급요건

- 노령급여
 - 노령연금
 - 보험가입기간 최소 15년 이상의 60세(남성) 또는 55세(여성); 가입기간 최소 20년 이상의 55세(남성) 또는 50세(여성); 가입기간 25년 이상일 경우 연령무관(신체적인 부담이 크거나 위험한 일에 종사하고 있다면 15년 이상)
 - 노령 가산금 : 가입자의 가입기간이 32년 이상일 시 지급
 - 노령청산금 : 노령연금 가입기간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60세(남성) 또는 55세(여성)
- 장애급여
 - 장애연금
 - 65세 미만이어야 하며, 최소 80%의 장애 정도로 판정되어야 하며, 최소 연속가입기간 6개월 또는 비연속가입기간 12개월 이상. 장애는 근로 중에 발생했거나 근로 중지 6개월

- 이내에 발생했어야 하지만, 근무 중 부상으로 나타난 것은 아니어야 함
- 장애급여(임의보험) : 35% 이상의 장애 정도로 판정되어야 함. 근무 중 부상으로 인한 장애도 포함

○ 유족급여

- 유족연금
 - 사망자가 사망 시 노령 또는 장애연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있었음
 - 수급자격이 있는 유족은 실업상태인 미망인이거나 장애인인 홀아비; 21세 미만의 아들 (장애인이면 24세); 미혼인 딸; 특정 조건 하의 피부양 부모, 형제, 미혼인 자매 포함
 - 여성 유족을 위한 유족연금은 (재)혼인 시 중지됨
- 사망급여(임의보험) : 가입자 사망 시 수급자격이 있는 유족에게 지급
- 장제비 : 사망자의 장례비를 지불하기 위해 지급

6 급여종류별 지급액

○ 노령급여

- 노령연금
 - <가입자 기본 소득의 2.5% × 보험료 납기간 년수>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
 - 공무원과 군인에게는, 연금이 첫 연금 지급액 10,000 파운드(pounds)에 대해 25%만큼, 다음 10,000 파운드(pound)에 대해 20%만큼, 20,000 파운드(pounds) 이상의 어떠한 금액에 대하여는 10%만큼 증가
 - 월 최저 노령연금은 법정 월 최저임금
 - 법정 월 최저임금은 9,765 파운드(pounds)
 - 월 최고 노령연금은 기본 소득의 80%
 - 노령 가산금 : 노령연금의 1달치에 해당하는 일시금이 가입기간 32년을 초과한 각 연도 마다 지급되며 최대 금액은 3개월분
- 노령청산금
 - <가입자의 마지막 2년 간 월 평균소득의 11%(가입기간 60개월 미만), 13%(가입기간 60개월 이상 120개월 미만), 또는 15%(특정 조건 충족 및 가입기간 120개월 이상) × 가입기간 개월 수>에 해당하는 일시금 지급

○ 장애급여

- 장애연금
 - <가입자 기본소득의 40% + 보험 적용된 근로기간의 각 연도마다 2%>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
 - 기본소득은 가입자의 전년도 월 평균소득(2년 내 15% 이상 또는 5년 내 30%이상의 가입자 임금의 증가 또는 감소는 고려되지 않음)
 - 월 최저 장애연금은 법정 월 최저임금
 - 법정 월 최저임금은 9,765 파운드(pounds)(2013년)
 - 월 최고 장애연금은 가입자 기본소득의 80%

- 장애급여(임의보험) : 전년도 가입자 가입소득의 50%에 해당하는 일시금이 지급됨.
가입자가 근무 중 부상으로 인한 완전한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급여 50% 증가

○ 유족급여

- 유족연금
 - 배우자연금 : 사망자가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있던 장애연금의 50%가 수급 자격이 있는 미망인(홀아비)에게 지급
 - 미망인은 배우자연금과 노령연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음
 - 고아연금 : 사망자가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있던 장애연금의 25%가 한 명의 수급자격이 있는 고아에게 지급됨; 한 명 이상의 고아에게는 37.5%가 동등하게 나누어짐. 완전한 고아에게는, 사망자가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있던 장애연금의 62.5%가 지급됨; 한 명 이상의 완전한 고아에게는 75%가 동등하게 나누어짐
 - 그 외의 피부양자 연금 : 사망자가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있던 장애연금의 25%가 수급자격이 있는 배우자 또는 고아의 부재 시, 각각의 피부양 부모에게 지급됨; 수급자격이 있는 배우자, 고아, 또는 둘 다 존재한다면 12.5%가 각각의 피부양 부모에게 지급
 - 유족연금 합계의 최대액은 사망자가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있던 장애연금의 80%임
- 사망급여(임의보험) : 사망자의 전년도 가입소득의 100%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됨.
가입자의 사망이 근무 중 부상으로 인한 것이었다면 일시금 50%만큼 증가
- 장제비
 - 사망자 생전 소득의 3개월 치에 해당하는 일시금 지급
 - 장제비 최고금액은 100 파운드(pounds)

7 관리운영기관

- 사회노동부(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Labor)
 - 전반적 감독 제공
- 사회보험기구(Social Insurance Institution)
 - 3자 이사회와 이사장에 의해 관리되며, 보험료 징수와 지역사무소 및 지사를 통해 제도를 관리함
 - <http://taminat.gov.sy>

<2018년 ISSA 자료>